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 관련 안내

①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 개요

- 본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는 「호스피스·완료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도록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음

명 칭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
소재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관 할	서울, 경기
담당자 연락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김원희(02-2276-2259)

- ※ 위탁기관은 본 협약을 한 후 협약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익일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②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범위

- 위탁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상담·교육 등 아래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

1. 상담: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환자·환자가족·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함 (※ 문의 시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가 응대 및 상담일지 기록)

- **상담 시간:** 평일 근무시간 8:30~17:30 (점심시간 12:00~13:00)
- **상담 방법:** 온라인,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시행함.

① 온라인 상담: nmc156@nmc.or.kr

② 전화 상담: 02-2276-2259

③ 방문 상담: 기관 요청 시 방문하여 상담 제공

- **상담 내용:** 주로 위탁의료기관 담당자와 상담 시행함.

① 위탁 의료기관 case발생 시 서식 작성방법 안내 및 등록 전 서류검토로 오류 방지.

② 매월 위탁 의료기관 담당자와 연락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과 방해 요인 파악

- 상담 후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는 해당 기록을 보관함 (위탁기관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기록을 공유 또는 제공할 수 있음)

2. **교육:**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함

- **교육 방법:** 집합교육 및 온오프 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제공 시기:** 연 1회 실시(위탁기관과 협의 후 실시)
 - ※ 신규위탁기관 및 실적 부진의료기관은 연 2회 실시
- **교육 내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법정서식 작성 방법 및 자기존중비율 등 위탁기관의 인력 및 구성원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실시
-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는 교육 시행 후 이수자 명단을 기록 및 관리

3. **심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상담 중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이행 거부 한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심의신청절차:**
 - ① 공용윤리위원회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윤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협약 맺은 기관장명의로 심의를 신청한다.
 - ②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의무기록과 쟁점사항을 첨부하여 공문 발송한다.
 - ③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공문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나, 사후에 반드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회의개최기준:** 심의 신청 또는 의결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지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회의 방법:**
 - ①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상황인 경우 서면 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심의 신청 또는 의결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지 15일 이내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일반적인 위원회 결정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법에 따른 심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결과 및 통보:**
 - ① 심의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위탁기관 및 심의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
 - ② 심의, 상담 및 교육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며, 그 결과를 기밀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 ③ 간사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4. **기타:** 위탁기관에서 시행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실적 및 통계 분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③ 협약 체결 기준 및 절차

- **협약 대상:**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원하는 의료기관
- **협약 기간:** 협약 기간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가능(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함)
- **신청 절차:**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와 연락 ➡ 신규협약신청(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서류검토 ➡ 검토결과 안내 ➡ 협약체결

1. 신규협약 신청 절차(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신규협약 신청 방법:**
 - ① 공용윤리위원회에 전화로 사전협의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청
 - ②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메일로 접수(med_nibplst@nibp.kr)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협약 신청 서류:**
 - ①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지원사업 협약 신청서(서식참조)
 - ② 사업 운영계획서(진료과목, 병상 수 및 의료진 규모 등 위탁기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서식참조)

2. 협약체결 절차(국립중앙의료원):

- 공용윤리위원회에 협약 체결 신청 및 공문 작성
 - ① 제출방법: 원본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②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별관 1층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김원희간호사 앞
- **국립중앙의료원 협약 체결 신청 서류**
 - 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요청 공문 1부(기관발행)
 - 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 신청서(서식참조)
 - ③ 위탁기관장 및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간인 날인한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2부(각 1부씩 보관)(서식참조)
 - ④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1부

④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관리료 수가

- **의학적 시술 기준에 따른 참여**(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
 - ① 심폐소생술 ② 혈액 투석
 - ③ 인공호흡기 ④ 체외생명유지술
- **인력기준:**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명이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수료, 등록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지원사업 협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탁기관 구성 및 주요 인력

가) 위탁 기관명

-

나) 위탁기관

- (병상 수, 호스피스 전문기관 여부)
- (의사 수) 총인원 00명(전문의 00명)
- (조직도)

- (연혁)

*

*

- (기타)

다) 주요 인력

구분	성명	부서	직위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비고
책임자						
업무 담당자						

라) 연명의료 시술 현황 및 시범 수가 청구 여부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4가지 의학적 시술 시행 여부를 O/X로 표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마) 연명의료 관련 서식작성 예상 건수(작성 대상 환자 수)

- (2025년 사망자 수)
- (말기 환자)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

기 관 정 보			
의료기관명			
기관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구분	☐ 병원 ☐ 요양병원 ☐ 기타 ()		
진료과목			
의사 수		병상 수	

담 당 자 정 보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협 약 사 항	
협약신청사유	
협약신청기간	협약체결일 ~ 협약체결일로부터 ()년

위와 같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협약신청의료기관장: _____(인)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00 의료기관(위탁기관)과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업무】

- 가. 위탁기관의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상담
- 나. 위탁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다.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 라. 위탁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 마. 위탁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제3조 【공용윤리위원회의 의무】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간, 장소, 방법 등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약 당시 위탁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을 기관 내에 안내하고, 소속 의료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용윤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비용】

위탁기관의 장은 업무 위탁을 위하여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2의 위탁비용을 협약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 유지】

양 협약기관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협약에 따른 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방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기관은 그 사유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사본 1부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송부한다.

년 월 일

국립중앙의료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서 길 준

00 의료기관의 장
